[모바일] 증권번호:

## 일반·전문금융소비자 여부 확인서

-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일반·전문금융소비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으로, <mark>아래 내용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</mark>.
-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의미합니다
-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9호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의미합니다.

(예) 국가, 한국은행, 금융회사, 주권상장법인, 지방자치단체, 금융협회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보험관계단체, 보험설계사·대리점 및 중개사 등 보험모집종사자, 단체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및 동일한 회사·사업장·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등

- 관계법규 등의 확인을 거쳐 전문금융소비자 여부를 판정하며, 필요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또한, 일반금융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, 관계법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(동일한 대우)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.

[전환가능 소비자 예시)]

주권상장법인, 지방자치단체, 단체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, 기업성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 및 동일한 회사·사업장·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등

11 11 11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	
□ 일반금융소비자	
□ 전문금융소비자	
※ 전문금융소비자 예시	
- [단체] 국가, 한국은행, 금융회사, 주권상장법인, 지방자치단체, 금융협회, 공공기관,	
지방공기업, 보험관계단체	
- [단체] 근로자 5인이상의 법인/단체(법인/단체 소속인이 아닌, 단체자격으로 가입하는 경우)	
등	
- [개인] 보험설계사, 대리점, 중개사 등 보험모집 종사자	
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제7항제3호(투자성 상품의 경우 제2호 포함)에 해당하는 전문금융소비자로, 관계법규에 따라 귀사로부터 일반금융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자 함	
□ 예 □ 아니오 (전문금융소비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.)	
※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	
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 일반금융소비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, 일반금융소비자와	
동일한 대우를 받고자 할 경우 상기 전환 신청이 필요합니다.	
※ 일반보험계약자로 전환을 요청하더라도 관계법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	

- □ 고객확인사항
- 1. 본인이 상기와 같이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정확한 것임을 확인합니다.
- 2. 상기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신청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사항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보험계약자 성명: 전자서명 친권자 / 후견인 성명: (서명/인) 대리인 성명: (서명/인) 성명: (서명/인) 위의 친권자는 1명만 서명한 경우 다른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 서명하였음을 의미합니다.